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의 안 변 호	1277
------------	------

발의연월일 : 2024. 7. 2.

발 의 자 : 장경태 의원 등 170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강백신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강백신

직 위 : 검사

탄핵소추사유

피소추자는 검사인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를 수사함에 있어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정치적 중립에 반하여 불공정하게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여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성이 매우 큰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당시 팀장 윤석열의 지휘를 받은 바 있고, 2022년부터 2023. 9. 24.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2024. 5. 29.까지는 서울중앙

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2023. 9. 5.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조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였는데, 피소추자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3. 9.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선임되었다.

가. 언론의 자유 침해

피소추자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들에 대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음에도 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머스 등 언론사의 전·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하였다.

피소추자는 이와 같이 위법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위하여, ① 2023. 9. 1. 신학림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② 2023. 9. 14.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 JTBC 본사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를 각 압수수색하고, ③ 2023. 10. 11. 리포엑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④ 2023. 10. 26.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와 손구민 전 경향신문 기자, 윤진희 전 유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각 압수수색하고, ⑤ 2023. 12. 6.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⑥ 2023. 12. 26. 이진동 유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피소추자는 위법한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① 2023. 11. 22. 이효상 경향신문 기사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② 2024. 1. 25. 이진동 유스버스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③ 2024. 3. 28. 봉지욱 전 JTBC 기사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④ 2024. 6. 5.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언론인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소환 조사를 실행하였다.

나. 피의사실공표

피소추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팀장으로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3. 9. 7.경 정경훈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검찰은 현재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수사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인터뷰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금품 제공한 정황을 확인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조우형씨를 다시 조사한 결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고 조우형씨도 조사 받는 과정에서 (2011년 조사 받을 때 대장동 관련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당시 직접(조사)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배임수재에 대한 피의사실 및 인터뷰 관련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같은 날 머니투데이를 통해 보도되었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에게 “김씨가 언론인을 거액으로 매수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인터뷰를 언론을 통해 유포했다는 게 사안의 본질이다.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의 개입이 치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배임수재 및 명예훼손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같은 날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제27조 위반 및 제21조 제1항 침해, 검찰청법 제4조 제3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는 제1항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들어 그와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하여는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든 공무원은 그가 가진 국

가권력을 남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검사 선배이자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그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준수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통하여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피소추자는 검찰청법 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범죄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유죄 추측 또는 예단을 갖도록 그 피의사실을 공표한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다목에서는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검찰청법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아니다. 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의 배임수재 혐의와 언론인들의 기사 작성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 없다.

피소추자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다.

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다목에서는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는 명예훼손죄를 수사할 수 없다.

피소추자는 검찰청법상 자신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검사로서 갖고 있는 수사권과 영장신청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인 언론인들에 대하여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검찰청법에 반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권이 없는 범죄를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위법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마. 헌법 제27조 4항(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 위반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은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 및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거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공소제기 전 기자에게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사건 관련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

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는 동시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인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누설한 것이 된다.

즉, 피소추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7조 공무원 비밀누설죄,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

행하지 않고 형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의 관행상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파면될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국회가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탄핵소추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가.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검찰청법 제4조, 형법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피소추자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범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헌법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헌법위반을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

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

나)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전·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없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여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위법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의도적

으로 공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피소추자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없이도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인권의 침해를 결과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의 형사절차상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범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 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는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다.

마)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 검찰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 ① 2023. 9. 7. 머니투데이 <검찰 '대선 전 허위 인터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배후세력 수사”>
- ② 2023. 9. 7. 경향신문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특별수사팀 구성>